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16일, 조용진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조용진 의원

나. 제안이유

○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이해 부족으로 교육 현장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이 비(非) 특수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교육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특수교육 진흥에 대하여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개별화교육,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교육감의 학교 특수교육 업무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경형)

가. 제안취지

-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 1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
-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개별화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체계 구축, 교원의 자질향상, 지도·감독 등에 관해 규정함.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수교육은 미흡한 실정임.
-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특수교육은 장기적 관점의 정책 기획이 필요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수교육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